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갱신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목욕 등)
2) 기능회복운동 (신체, 인지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등)
3) 시설환경관리 (정돈, 세탁 등)
4) 정서지원 (치매관리, 의사소통 등)
5) 간호서비스 (바이탈관리, 욕창, 투약관리 등)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매월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 일반 (20%)
- 감경 (12%,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영요양센터

－비급여 : 1일 식대 (2500 * 3 = 7500원)
－입원 및 외박 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가 발생한다.

③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만나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징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체결한다.
③ 시설 입소전 입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② 복용약 처방전

7. 계약의 해지

－입소자 사망 시 자동 해지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시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